

의안번호	2211812
의 퇴 인	박상혁의원
회 답 일	2025. 8. 28
추 계 번호	25C4092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등의 스포츠관람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억원, 2029년 1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억원(연평균 4,0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장애인등의 스포츠관람권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안 제18조의3)	100	-	-	100	-	200	4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8조의3(장애인 등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스포츠관람권 보장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인등의 스포츠관람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제4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8조의3(장애인 등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등)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안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스포츠관람권 보장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인등의 스포츠관람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그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첫 실태조사는 법 시행일이 속하는 2026년에 실시되는 것으로 가정
-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비로 3년마다 1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
 -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7조¹⁾에 따라 “스포츠산업 해외시장 동향조사”를 위하여 2025년에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1) 제7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스포츠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표 3] 실태조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장애인등의 스포츠관람권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안 제18조의3)	100			100		2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이제정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제정	02-6788-3739	jejeong2@na.go.kr